

경조비지급 규정

- 제정 : 1999. 10. 1.
- 개정 : 2017. 8. 31.
- 개정 : 2018. 8. 31.
- 개정 : 2019. 6. 18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 교직원의 경조사 발생시 경조비, 화환, 근조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경조금 지급구분) 경조비 지급은 경하 및 기복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. 경하 : 본인의 결혼, 본인의 회갑, 자녀의 결혼, 부모의 회갑, 배우자 부모의 회갑
2. 기복 : 본인의 사망, 부모의 사망, 자녀의 사망, 배우자의 사망, 배우자 부모의 사망

제3조(지급액) ①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경조비 지급내역은 [별표]와 같다.

- ② 교직원 중 1인 이상(친족일 경우)이 전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대하여만 경조비를 지급한다.

제4조(경조비 지급절차) 제2조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직원 본인 또는 소속 부서의 교직원은 총무과에 통보한다.

제5조(경조비 지급) ① 비서실은 통보 받은 지급사유를 접수한 즉시 총장의 결재를 얻은 후 지급하여야 한다.

- ② 경조비는 현금으로 지급 한다.
- ③ 경조비 지급명의를 총장으로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4-3-3 경조비지급 규정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】 <개정 2018. 9. 1>

구 분	종 별	지 급 액	비 고
경 하	본인 결혼 본인 회갑 자녀 결혼 부모 회갑	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	
기 복	본인 사망 배우자 사망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사망 자녀 사망	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	
기타 (화환, 근조)	위의 해당사항 및 조부모 사망	10만원 상당	